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대 〉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98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대(안 제10조제1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상회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2. 20.

다. 회 부 일 : 2025. 2.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대(안 제10조제1항)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경과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방송·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u>3년</u>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4. (생략)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신설></u>	제10조(결격사유)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u>5년</u> ----- ----- 3. 4. (현행과 같음) 5. ----- ----- ----- <u>5년</u> ----- 6. ----- ----- ----- <u>5년</u>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

②·③ (생략)	<u>으로 정하는 방송·통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 의견

□ 개정안에 따라 현행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법 제10조제1항은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6가지임.¹⁾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개정안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방송·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추가하고자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의 결격사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

<개정안에 따른 방통위원 결격사유의 변화>

1. 「정당법」 제22조²⁾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하였던 자
→ “5년”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³⁾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⁴⁾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년”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⁵⁾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년”
7.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법 상 규정된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10항 제3호의 「국가공무원법」 상의 결격사유는 공직자가 될 수 없는 최소한의 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정당법」에 따른 당원(제10조제1항제1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제10조제1항제2호) 등의 결격사유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공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결격사유 중에서도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 2월에 개정을 통해 추가된 사유임.⁶⁾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6) 【제정·개정이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을 위해서는 주요 방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략)

- 방통위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공성 등의 가치확보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현재 “3년”으로 규정된 결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방송법」 제6조제9항⁷⁾이 방송의 정치적 균형성 유지의무를 규정한다는 점, 불특정다수의 시청자에게 전파하는 방송의 특성상 방송콘텐츠가 공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통위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공공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신설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감독기관으로서 소관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자를 위원 선임에서 배제하여, 위원회의 도덕성, 정당성, 공공성 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유사한 선행 입법례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외에 방송·통신 관계 법령에서는 민간

7)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 사업자나 그 임원 등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한을 3년 등으로 두고 있음.

-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하는 방통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이 경우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는데, 방송 관계 법령으로
「방송법」을 예시사항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른 방통위원 결격사유의 변화>

법률	대상	관련 결격사유
개정안	방통위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방송·통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융위원회법」 제8조	금융위 임명직위원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 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방송법」 제13조제2항	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방송법」 제13조제3항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률	대상	관련 결격사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등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다만, 헌법재판소는 결격사유와 관련해 공직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의 특성과 공익을 고려하되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으로, 여러 가치에 대한 형량을 통해 결격기간이나 결격사유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헌법재판소(헌재 2024.7.18. 선고, 2023헌마460)는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 제5호에 대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음.⁸⁾

8)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음.

- 기존 입법례를 살펴보면, 앞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결격사유에 대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5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우 3년, 정당 당원인 경우 3년(위헌결정)⁹⁾, 선거 출마자의 경우 5년,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경우 3년 등으로 사안이나 공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 「국가공무원법」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시 2년,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시 2년,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시 3년, 미성년성범죄의 경우 20년, 파면처분시 5년, 해임처분시 3년으로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현재 3년의 결격기간을 일괄하여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함께,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그 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방통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통령의 임명권 제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이전 개정 사례와 동일하게 국회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9) 앞서 헌법재판소(2023헌마460)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조항임.

-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및 독립성, 공공성 등의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함께, 공무담임권 침해 등 기본권과의 가치형량 문제, 관련 선행입법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

< 다른 법률상 결격사유 조항 >

법원 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3헌마460)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융 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권익 위원회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국가인권 위원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감사원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